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12.

발 의 자 : 윤서규 · 박세채 · 전인철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김상조 · 허 복 · 김도문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석호진(13인)

1. 제안이유

-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의식 고취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함
 -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함
-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규정(안 제3조)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구미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함
- 효도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함(안 제4조)

○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 규정(안 제6조)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참고사항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세대 이상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구미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 여)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4세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illegible]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최서기	최서기	
박세채	박세채	
박교상	박교상	
김상조	김상조	
이강원	이강원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로	김영로	
허복	허복	
구자재	구자재	
김영운	김영운	
김영주	김영주	
전인철	전인철	